

《英案》을 통해 본 갑오전쟁 직후의 조청관계

김봉준 (인천대 중국학술원)

I. 들어가며

이 글은 1894년에 발발한 갑오전쟁으로 인해 단절된 조청관계의 실상과 현안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갑오전쟁은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의 의의와 후속된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에 비해 전쟁 직후의 현실과 주요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은 별개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당시 상황을 소상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될 필요가 있다.

갑오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주조선 총상무위원 원세개(袁世凱, 1859~1916)는 당소의(唐紹儀, 1862~1938)에게 직무를 이임하고 먼저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쟁은 결국 청의 패배로 종결되었으며, 전쟁의 혼란 속에서 주한성 청국공사는 일본군에 의해 폐쇄되었다. 이렇게 조청 양국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조선 경내에 남아 있는 청국상민의 처우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할 기관 역시 부재한 상태가 되었다. 다만 당소의는 한성을 떠나기 직전에 주한성 영국공사 가드너(嘉托瑪, Christopher T. Gardner, 1842~1914)에게 청국상민의 보호와 관련 사무를 대신 관장해줄 것을 위탁하였다. 조선에 있는 청국상민의 보호와 관련 사무 관장의 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전쟁 이후 조청 양국에게 있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당소의로부터 청 상민과 재산의 보호를 요청 받은 가드너는 1894~1899년의 기간 동안 청 상민에 대한 사무를 대리하였으며, 1895년 2월에는 淸의 總理衙門에서도 주청영국공사 오코너(歐格訥, Nicholas R. O'Conor, 1843~1908)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주한영국공사가 “所有中國在漢商民以及公署房產”에 대한 보호와 “非國民的保護”, 즉 청국상민에 관한 사

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했음을 조선정부에 알렸다. 그러나 조선에 있는 청국상민에 대한 업무를 영국 공사가 대신 관장하는 문제는 청이 영국에 요청하고 영국이 이를 수락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으며, 조선 정부의 동의 또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소이가 조선 정부에 따로 요청을 보내지 않았고 조선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다분히 남아 있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英案》은 1883년부터 1905년까지 朝鮮 外衙門과 駐漢城英國公署 가 주고받았던 공문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갑오전쟁 직후부터 한청통상조약 체결까지의 기간(1894년~1900년)의 조청관계 및 조선 경내의 청국상민과 관련된 문건을 수록하고 있어 전쟁 직후 조청 양국 관계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英案》의 수록문건을 통해 갑오전쟁 직후의 조선과 청, 그리고 영국이 얽힌 문제와 그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갑오전쟁 직후, 청국상민 사무의 위탁

당소이로부터 청 상민과 재산의 보호를 요청받은 주한영국공사는 1894~1899년의 기간 동안 청 상민에 대한 사무를 대리하였다(〈표1〉 참조). 1895년 2월에는 淸 總理衙門에서도 주청 영국공사 오코너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주한성 영국공사가 “所有中國在漢商民以及公署房產”에 대한 보호와 “非國民的保護”과 같은 청국상민에 관한 일체 사무를 처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1894년 이후, 가드너는 조선 정부 측에 보내는 공문에 직함을 “大英欽命駐紮朝鮮總理各口交涉通商事務兼保護華商總領事官”으로 명시하면서 청국상민 사무를 직접 관장하려 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표1〉 淸國商民 관련 문건이 수록된 《英案》

書號	原題目	期間	件數
第3冊	英案 11, 12, 13	1894年 7月 15日~1895年 11月 15日	69件
第4冊	英案 14, 15, 16	1896年 1月 1日~1898년 9月 14日	17件
第5冊	英案 17, 18	1898年 2月 3日~1899年 1月 20日	39件
第6/7冊	英案 19, 20, 21, 22, 23	1899年 1月 4日~1900年 1月 6日	86件

1894년 6월 25일, 주한영국공사 가드너는 朝鮮交涉通商事務 조병직(趙秉稷, 1833~1901)에게 조선에 있는 청 상민과 관련한 사무와 주한청국공서의 관리를 주한영국공관에서 관장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주한성 영국공사가 청국상민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두고 조선 정부는 1894년 11월 30일에 독자적으로 〈保護淸商規則〉을 제정하여 주한성 영국공사의 청국상민 사무 관장을 부정하였다. 이에 가드너는 〈保護淸商規則〉의 8조를 거론하며 적어도 영국공사가 청국상민의 聽審權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선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재판권도 아닌 청심권에 대한 요청을 조선정부가 거부하면서 조선 정부가 주한성 영국공사를 배제하고 청국 상민에 대한 재판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1895년 9월 14일, 후임 주한성 영국공사 힐리어(禧在明, Walter C. Hillier, 1849~1927)는 조선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을 만나 청 총리아문이 조선에 주재하는 청국상민에 관한 “一切事宜”를 영국 측이 “保護管理” 하도록 위탁했음을 알렸다. 이에 김윤식은 힐리어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라고 답했다. 이에 힐리어는 이틀 뒤인 9월 16일에 조회를 조선 정부에 발송하였다. 조선정부는 영국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동시에 조선 정부는 영국 측에 청에 주재하고 있는 조선 상민의 보호를 의뢰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保護淸商規則〉은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후 조선에 주재하는 청국상민에게는 조선과 영국 간의 협약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었다.

朝英 양국 간의 규정에 따라 청국상민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 재판관할권은 주한성 영국공관에 귀속될 수 있게 되었다.

Ⅲ. 청국상민 사무 관장을 둘러싼 조·청·영의 의도

영국에 청을 대신해서 조선에 있는 청국상민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청의 입장에서는 분명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결국 1896년 당소의가 총영사(總領事)으로 재차 조선으로 돌아와 영사서(領事署)를 개설하였으며, 자국 상민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양국이 정식으로 국교를 재개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당소의의 직함과 영사 서 역시 조선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9년 조청 양국 간 《韓淸通商條約》이 체결되기 전 까지 주한성 영국공관의 업무 대리는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청국상민 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는 《英案》에 남아 있는 문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94년 이후 《英案》에 수록되어 있는 청국상민 관련 문건은 갑 오전쟁 이후 공식적으로 단절된 한중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당시 양국의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게 해준다.

<표 2> 甲午戰爭 直後 《英案》의 淸國商民 文件

時期	形式	內 容	件 數
1894. 7. 15.	照會	淸과 맺은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폐기하고 조일 수호조약의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	1
1894. 8. 初 4.	照會	각국 公使에게 萬國通例에 의거한 접견 방식을 준수해줄 것을 공지한 내용.	2
1894. 8. 初 4.	照會	朝鮮政府가 외국인 고문을 고용할 때 한 국가에만 偏重하지 않겠다는 내용.	3
1894. 9. 22.	信	이전 淸에서 고용한 각 항구의 상무위원들을 귀환	1

	函	시키고 朝鮮 政府에서 담당 위원을 새로 고용하겠다는 내용.	
1894. 11. 初 4.	照 會	淸 商民의 거주 문제와 관련한 내용. 淸商保護規則 첨부.	4
1895. 3. 16.	信 函	保護淸商規則施行細則을 발송한다는 내용. 保護淸商 規則施行細則一冊 첨부.	2
1895. 4. 24.	照 會	鑛務, 電線, 鐵道 등의 利權 事業에 대해 朝鮮政府 는 이전 淸의 屬邦이었지만 지금은 자주권을 가진 국가이므로 간섭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2
1895. 4. 29.	信 函	朝鮮 公使의 自主와 그 권한에 관련한 내용.	1
1895. 6. 19.	照 會	각국 租界 區劃과 관련.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	4
1895. 8. 初 1.	照 會	각국 雜居租界 내에 淸 商民의 건물이 난잡하게 들 어서 있어 해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내용.	3
1895. 8. 19.	照 會	淸 商民의 租界 내 居住 현황. 청 상민들이 독점하 고 있는 조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	1
1895. 9. 14.	照 會	현재 淸에 朝鮮 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고 朝鮮인 이 많지는 않지만 공사 업무는 필요하니 영국 공사 에 대리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	1
1899. 1. 9	照 覆	조선 정부가 조선 경내의 외국인 통행에 대해 영국 과 일본 국적 상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에 반해 청 상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항 의하는 내용.	1

*出典: 《英案》第3, 4, 5, 6, 7冊을 참조.

위에서 보듯, 전쟁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조청 양국 간에는 租界, 鑛務, 電線, 鐵道 등 이권문제뿐만 아니라 주권 문제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계속 해서 논의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

는 전쟁 이후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주권을 입증하려고 하였으며, 원세개가 총상무위원으로 있었던 시기에 청국상민에게 주어졌던 각종 특혜를 회수하려고 하였다.

주한성 영국공사는 표면적으로는 청의 요청을 수락하여 청국상민의 보호 사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영국이 청의 요청을 받은 것에도 이 유가 있겠지만 청의 위탁을 빌미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전쟁 이후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한다면, 영국은 러시아와 같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가 조선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무역 및 통상의 측면에서도 당시 영국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의 유통을 청국상민들이 맡고 있었던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영국이 조선에서 청국상민을 보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VI. 나가면서

본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갑오전쟁의 전후 상황과 조청 관계의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현안에 얽힌 국제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英案》에 수록되어 있는 문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단절된 조청 양국 관계에서 청국상민의 처우와 사무 관장 문제를 두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은 자국 상민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며, 영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청국상민의 보호 문제에 개입하였다. 조선의 경우, 주권국가로 대등한 입장에서 청과 영국과 협상에 나서려는 목적이 있었다.

나아가 갑오전쟁 직후, 조선 정부는 일본 등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실질적 주권을 찾고자 여러 방면에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삼국간섭 이후 동아시아 정세에서 조청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교 재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 결과, 1896년부터 조청 양국은 새로운 국교를 위한 조약의 체결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1899년에 비로소 《한청통상조약》을 체결될 수 있었다. 이 조약으로 양국 사절이 각국의 수도에 상주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이에 서수봉(徐壽朋)이 “大清欽差出使大臣”으로

조선에 부임할 수 있었다. 갑오전쟁으로 단절된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국상민에 관한 사무 또한 1899년 말이 되어서야 한성에 있는 청국 관원이 다시 관장할 수 있었다.